

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우리구 이미지(CI) 통합개발계획에 따른 CI가 확정됨에 따라 변경된 구 심벌마크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구기 · 문장 · 휘장 등의 모양변경

- 구기 : 별표 제1호
- 문장 : 별표 제2호
- 휘장 : 별표 제3호

3. 검토의견

본 조례개정안은 1993년에 제정된 우리구 심벌마크를 시대적감각과 지역적 특색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 그동안 각계각층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차례에 걸친 심의절차를 거쳐 채택된 심벌마크를 확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